

한국인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김 미 혜 · 정 진 경**

[요 약]

본 연구는 복지권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복지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 16개 시도 2,05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대다수의 국민들은 복지의 1차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본인의 복지수급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급권 자격박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는 등 권리인식과 권리행사 측면에서 매우 높은 인식적 특징을 보였다. 둘째, 의무이행에 있어 세금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의 유보적 입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여지가 좀더 두드러졌다. 거주지 복지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찬성의 뜻을 보였고, 복지 발전을 위한 실천방법에 있어서도 성실한 세금납부,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 적극적 참여의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전반적 복지수준이나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즉, 복지수준은 중진국 혹은 후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보장 수준은 잘사는 사람에게만 일부 보장되어 있거나 전혀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는 아무 것도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 인식이나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여지가 높는데 비해 세금인상이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무이행여지가 부정적인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더 이상 국민들을 수동적인 복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국민들의 높은 권리의식과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여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복지권, 복지권리의식, 복지권리행사, 복지의무이행

*본 연구는 두뇌한국21(BK21) 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

**김미혜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부교수,

정진경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1. 서론

복지국가의 발달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 가운데 하나는 복지국가의 발전을 권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Marshall은 서구 자본주의사회의 발달을 18세기의 시민권(civil right), 19세기의 정치권(political right), 20세기의 사회권(social right)이라는 각 권리의 발달로 특징 지우면서 완전한 시민복지의 구현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임을 밝히고 있다(박순우, 1998). 이 가운데 '사회권'은 광범위한 의미의 복지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한 권리로부터 문명화된 삶을 누리고 사회적 유산에 참여할 권리에 이르는 제반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남찬섭 역, 1996). 그리고 이러한 권리들은 현대 복지제도와 맞물려 상호 발전되어 왔으며 Wellman(1982)은 광범위한 개념의 복지권 인정은 복지국가의 이상과도 부합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제도의 발전이 국가주도하에 이루어져 오면서(이혜경, 1993), 제도의 내용보다는 형식적 제도의 틀이 앞서 발전해 온 경향이 있으며, 권리로서의 복지에 대한 인식도 국민들에 비해 정책적 차원에서 법적 규정이 더 앞서 온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헌법을 통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헌법 제34조 제2항 이하에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와 함께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등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복지제도의 발전을 복지권리의 확대로 설명하는 것은, 곧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권리의 주체인 국민 스스로도 복지에 대해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요구와 주장으로 복지제도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개선 및 발전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복지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 두 당사자의 의식과 실천 뿐 아니라 복지대상자의 권리주장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전문가집단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복지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과연 국민 스스로 복지수급에 대해 얼마나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제도들은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장치로 언제 어떠한 위험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 전체가 잠재적인 복지의 대상자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이 복지제도를 특정 요보호대상만을 위한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당연한 권리로써 받아들일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지권이 복지제도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복지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복지권의 개념

사전적 의미로 권리란 '어떤 일을 자유로이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 원칙에 호소하는 도덕적 권리부터 법에 의해 인정되고 부여된 법적 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권리에 대한 논의는 주로 법개론이나 도덕 철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며 권리의 역사적 변천과정, 권리의 주체와 객체,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 등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권리의 종류는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양하며, 이는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생존권, 행복추구권, 사회권, 재산권 등 세부적이고 다양한 권리들로 파생되거나 생성되고 있다.

복지권 역시 수많은 권리 가운데 하나로 20세기 초 서구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국가책임하의 복지가 국민의 권리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영국 등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제도의 발전과정 뿐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분야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권에 관한 논의조차 풍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복지를 권리로 인정한 최초의 선언은 1948년 국제연합의 인권선언에 나타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로(제22조), 여기서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이인재 외, 1999). 한편, 일본 현대복지학사전(신섭중 외 역, 1995)에서는 '복지권이란 넓은 의미로 말하면 생존권의 일종으로 빈곤층, 노인, 장애자 등 복지대상자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권리의 총칭이며, 국민의 최저생활권이나 행복추구권, 나아가 시민적 권리를 포함하는 적극적 의미를 지닌다'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인권선언이나 일본의 복지학사전의 정의는 복지권을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정의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보다 일반적인 복지권의 개념은 복지급여에 대한 권리로만 이해되어온 경향이 있다(Kelly, 1994). Peffer는 복지권의 범위속에 포함될 수 있는 재화의 범위를 명시하면서 복지권이란 우리가 생존하고 가치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김만두 역, 1989). Cohen & Rushton(1982)도 복지권 개념을 급여에 대한 권리로서 다양한 종류의 현금급여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 하였다. 이러한 복지권의 법적 의미는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법이 부여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윤찬영, 1998).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복지권의 정의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또는 단편적으로만 설명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정의를 필요하리라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지권이란 '시민으로서 개인이 그가 속한 정부에 대해 소유하는 도덕적·법적 권리로서, 다양한 복지제도의 서비스와 급

부 및 제도개선에 대해, 법적 혹은 조직적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다양한 측면, 즉 권리인식과 권리행사, 권리옹호와 의무이행의 조화로운 균형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 여기서 '권리인식'이란 권리주체가 법에 의해 보장된 이익의 정당함을 인식하는 것이며, '권리행사'란 권리가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려는 행위, 즉 권리의 내용인 이익을 향유하려는 행위라 할 수 있다(홍성찬, 2002). '권리옹호'와 관련해서는 권리의 내용에 대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능력이 제약된 대상자의 권리옹호를 대변할 시스템인 에드보커시(advocacy)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일본 현대복지학사전, 신섭중 외 역, 1994). 한편,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권리와 의무의 조화를 통해서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며 이것은 권리의식이 확고한 사회를 전제로 한다(홍성찬, 2002).

본 연구에서는 복지권을 이와 같은 4가지 측면 - 인식적, 실천적, 옹호적, 의무이행-에서 설명함으로써 복지권의 개념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1)

(1) 인식적 측면

인식적 측면에서의 복지권은 국민들과 국가 모두가 과연 복지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복지제도에 대해 '자혜'가 아닌 '권리'로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를 권리로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해당 복지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원인규명과 복지수급에 대한 반응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복지제도를 국가의 요보호자에 대한 자선적 시혜로 인식하는 경우는 이들의 빈곤이나 문제의 책임이 요보호자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때 복지가 주어지는 경우 수급자의 적절한 반응은 감사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올수록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국가는 복지급부를 제공할 윤리적 책임이 있으며, 국민은 공공 복지에 대한 급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Wellman, 1982 : 김만두 역, 1989).

복지권에 대한 인식을 복지권리의 주체인 국민과 객체인 국가의 입장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국민의 경우는 국민 개개인이 복지수급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 때 당연한 권리로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국가의 경우는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국가의 책임하에 제도적으로 실시하며 정당한 권리 요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정책적 인식을 의미한다.

1) Ruth Cohen & Andree Rushton(1982)은 복지권이 보통 인식(idea)과 실천(work)의 영역에서 설명되곤 하였으며, 중요 인식으로는 모든 시민이 복지급부에 대해 명확하게 제도화되고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복지권 실천의 주요요소는 정보제공(information)을 비롯한 효과적인 충고(advice)와 옹호(advocacy)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2) 실천적 측면

실천적 측면에서의 복지권은 권리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권리의 주체가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다(Teacher's Ed., 1994)²⁾. 권리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지는 것이라는 법적언처림(홍성찬, 2002), 복지권 역시 누구나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산물이 아니다. 이는 평등의 기회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의 추상적 기회일 뿐이며, 이를 구체적 결과물로 획득하는 것은 권리주체들의 권리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행사는 권리주체인 국민들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한 법적 청구나 이의신청,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상대로 한 서비스 급부 청구,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적 활동에의 참여, 제도개선이나 확대를 위한 특정단체의 활동 참여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국가 역시 인식적 차원에서 아무리 국민의 복지권을 인정한다해도 권리행사가 법적 규정이나 제도, 행정적 절차를 통해 실제 행해질 수 없다면 이것 역시 온전한 복지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권리주체인 국민은 적극적 권리행사를, 국가는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한다.

(3) 옹호적 측면

복지권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첫째, 복지수급의 신청과정이나 서비스제공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스티그마의 문제³⁾이거나 둘째, 상대적으로 정보와 힘에 무력한 복지 대상자의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복지권에 대한 공식적 옹호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옹호적 측면에서 복지권의 특성으로 정의해 보면, '복지권은 권리의 소유자가 어떤 재회를 추구하고 향유하는 것을 장려시키고 도와주는 타인의 노력에 대해 일반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김만두 역, 1988)'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의 조직적 노력에 의해 복지대상자의 권리가 옹호되는 사례를 미국과 영국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66년 '전국복지권연합'(National Welfare Rights Organization)이 결성되어 '적절한 임금(adequate income), 정의(justice), 존엄(dignity), 민주주의(democracy)'라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1970년대 중반까지 복지권 운동을 전개했다(Kornbluh, 1998). 지역단위에 기반을 둔 이들의 풀뿌리 복지권 운동은 복지수혜에 적합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복지에 신청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운동이었으며, 동시에 복지수급에 따르는 스티그마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영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복지권 옹호사업(welfare right advisory work)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는 지방정부

2) 'The fight for welfare rights'(Teacher's Ed. New York : March 11, 1994)에서 대부분의 미국인은 가난과 실업으로부터의 구제가 기본적인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은 투쟁과 쟁취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1930년 대공황시기부터 1970년대 역사적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3) 백종만(1988)은 복지에 대한 권리가 인권이라고 주장될 수 있다면 복지제공에 있어서 수반될 수 있는 낙인(stigma) 문제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고, 자선이나 관용에 기초한 복지제공에 수반되는 우월성과 우연성을 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당국에 복지권 담당관료(welfare right officers)를 임명하기도 하였고, 1990년대는 사회복지사(welfare rights worker)가 지역복지 기관에서 복지권 옹호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빈곤 요보호 계층에 대한 보충급여의 확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Alcock : Shepherd, etc., 1991).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복지권 옹호와 관련된 별도의 공식적인 조직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자격심사 등 대상자 선정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태도에 의해 복지대상자가 수치심이나 낙인감을 느끼게 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박태룡, 1992 : 이혜원 1999). 옹호적 측면에서의 복지권은 국민이나 국가 이외에 원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의무이행 측면

권리에 비해 의무는 법적 규정에 의한 강제보다는 도덕적 원칙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복지권에 있어서도 권리를 강조하는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개념인 '의무'에 대해서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안상훈, 2000 : Nahan, 1996).⁴⁾ 시민권을 주장한 Marshall은 권리가 주장될 수 있으려면 요구자는 자신의 의무를 만족시켜야 하며, 이 때 의무에는 납세 및 보험기여의 의무, 가족성원의 교육, 공동체 복지의 증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납세의 의무는 납세자로서 모든 국민이 국가에 일정 수준의 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기반을 제공(박순우, 1995)하기 때문에 복지권 논의에 있어 주요 개념을 차지한다.

이러한 의무이행은 복지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세금 및 보험기여의 법적 의무 이외에 국민들 스스로 복지발전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의무이행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일 역시 중요하리라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복지권의 복합적 특성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4)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에는 김상균·정원오(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김영란(199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이인재(1998), "IMF 관리체제 이후 한국인의 사회복지 의식에 관한 연구", 최 균·류진석(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 이중성" 등이 있다.

〈표 1〉 복지권의 복합적 개념 특성

요 소	주 체	핵 심 내 용	비 고
권리인식	국민	· 잠재적 복지대상자 인식 · 권리로서 복지수급 인식	
	국가	· 국가책임 · 자혜가 아닌 권리 인정	
권리행사	국민	· 복지급부 및 자격 요구 · 제도개선 요구	· 노동조합, 이익집단 등 조직적 권리주장 · 법적 청구
	국가	· 법, 제도상 구체적 권리 규정 · 행정시스템 마련	
권리옹호	전문가 집단	· 스티그마 불식 · 정보제공, 권리옹호	· 권리옹호 조직
의무이행	국민	· 납세 및 보험기여 등	· 기타 국민 실천영역

2) 복지권과 복지제도

복지권과 복지제도는 그릇(frame)과 내용물(contents)의 관계처럼 상호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되어 지면서 확대 혹은 축소되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첫째,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복지제도에 대한 논의, 둘째, 역사적 과정에서 나타난 권리의 확대와 복지제도의 발전에 대한 논의, 셋째, 복지권과 의무이행 의지 및 친복지적 태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논의로서 ILO는, 복지권의 기본적인 것으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1952)'을 규정하고, 이후 1989년 사회보장 권리에서는 ① 사회보장의 보호대상을 보편적으로 균등하게 적용해야 하며, ② 의료, 상병, 실업, 노령, 가족, 출산, 장애 등 9개의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고, ③ 사회보험, 일반조세에 의한 보호, 관리운영의 공공성 확보 등 다양한 보호형태를 마련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조홍식, 2000). ILO의 권고는 복지권의 기준이 되는 내용으로 위의 3가지가 한 나라의 복지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Pete(1989)도 미래의 새로운 복지체계는 보편적 가치와 권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어, 국가책임의 복지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수많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 논의는, 이러한 복지권과 복지제도가 역사적 발달과정 속에서 상호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다. Marshall은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을 권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정리하면서, 20세기의 주된 발전을 복지국가의 발전과 사회적 시민권의 확장으로 특징지었다(안상훈, 2000). Pierson(1991)은 복지국가의

발달단계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권리의 확대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거시적인 복지 국가의 발달과정 뿐 아니라 하나 하나의 개별적인 복지제도 역시 복지대상자의 적극적인 권리주장이 나 혹은 정책당국의 인식변화에 의해 확대 발전되어 왔다. 최근 개정된 모성보호법은 여성의 사회적 권리와 모성보호 권리에 대한 여성계의 적극적 주장의 결과로서 전자의 예에 해당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경우는 정책당국의 인식변화에 의한 제도의 발전 예로,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달리 저소득빈곤층의 복지수급에 대한 권리인식의 전환으로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의 법적 용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복지권과 복지제도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없이는 국가의 제도적 보장장치 마련의 의무 내지 행정당국의 적절한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황청일 외, 1995).

세 번째 논의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소수인데 국민들의 권리의식과 의무이행 및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 사이에는 다양한 역동적인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⁵⁾ 즉, 권리의식과 의무이행 의지 및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가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을 수도 있으며, 권리의식은 높으나 의무이행 의지 및 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낮게 나타날 수도 있고, 권리의식 및 의무이행 의지는 모두 높으나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는 매우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의 관계는 특히 그 나라의 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갖추어졌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각 나라의 복지수준이 다양함과 마찬가지로 복지권의 형태와 확대 역시 서로 다른 사회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Moon, 1998).

본 연구의 내용은 세 번째 논의에 가까우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의무이행 의지 및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에는 어떠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일반국민들로써, 현재의 복지수급자에 제한하지 않고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Langan, 1998).

본 연구의 자료수집 절차는 먼저 연구진에 의해 복지권에 대한 개념과 이론의 검토 후 상당한 시간과 노력에 의해 질문지 구성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조사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표본추출 및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도구로 전화조사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특정계층에 편중됨이 없이 모집단을 대표할만한 광범위한 표본추출이 가능하다는 점, 둘째, 조사자 등에 의한 주

5) 안상훈(2000)은 복지권과 복지의무에 따라 복지수혜자(권리)와 복지납세자(의무)로 구분하고 복지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복지지위의 3가지 측면을 구조적인 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3가지 복지지위의 이해관계에 따라 친복지적 태도 및 친복지 정당지지라는 복지정치의 인과경로가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다.

관적인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보다 솔직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 셋째, 연구일정의 효율성 등 전화조사의 장점이 국민인식조사의 도구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단, 전화조사의 단점인 조사시간의 제약에 따른 질문지 구성의 한계를 감안하여 연구목적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질문선정과 용어의 선택을 고려했다. 또 가장 중요한 유효표본의 확보를 위해 총 문항수의 90% 이상 답변이 완료된 응답만을 포함하는 등 전화조사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남녀이다. 조사대상 선정은 16개 시·도별 인구수 및 행정단위별 비율을 기준으로 지역별 비례할당에 의한 무작위 추출법(Proportionate Random Quota Sampling)에 의해 당초 조사대상 목표인 2,000명의 10배수의 전화번호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조사도중 20세 미만의 응답자는 제외하였으며, 총 문항수의 90% 이상 응답자만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총 2,050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전화조사는 2002. 2. 4(월)부터 2. 6(수)까지 3일 동안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였으며, 표본의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16\%$ 이다. 자료의 분석은 사회과학 통계패키지 SPSS Windows(ver 10.0)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각 조사영역에 대한 기술분석을 중심으로 일반적 경향과 특성을 기술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총 응답자수는 2,050명으로 이를 권역별로 나누어 보면 서울 462명(22.5%), 인천·경기 478명(23.3%), 충청권 208명(10.2%), 부산·경남 344명(16.8%), 대구·경북 233명(11.3%), 호남권 239명(11.7%), 강원·제주 86명(4.2%)이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현재 본인을 포함한 가족내 복지수급 유무 등 6개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성별은 남자 998명(48.7%), 여자 1,052명(51.3%)으로 비교적 고르게 응답하였으며, 연령은 30대가 520명(25.4%), 20대 506명(24.7%), 40대 438명(21.4%), 50대 324명(15.8%), 60대 이상 262명(12.8%) 순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961명(47.2%), 대졸 이상 727명(35.7%), 중졸이하가 347명(17.0%)이었으며 직업으로는 주부 590명(28.9%), 자영업 342명(16.8%), 학생 250명(12.2%), 사무직 227명(11.1%) 순이었다.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895명(4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 100만원 미만은 654명(31.9%), 300만원 이상은 141명(6.9%)이었다. 현재 응답자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중에 고령이나 장애, 퇴직, 실직 등의 문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응답자는 338명으로 전체 응답자중 16.5%였다.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N=2,050)

항 목	응답자 (%)
성별	
남	998 (48.7)
여	1,052 (51.3)
연령	
20대	506 (24.7)
30대	520 (25.4)
40대	438 (21.4)
50대	324 (15.8)
60대 이상	262 (12.8)
학력	
중졸 이하	347 (17.0)
고졸	961 (47.2)
대졸 이상	727 (35.7)
직업	
자영업	342 (16.8)
생산직	187 (9.1)
사무직	227 (11.1)
농림어업	86 (4.2)
학생	250 (12.2)
주부	590 (28.9)
무직·기타	361 (17.7)
소득	
월 100만원 미만	654 (31.9)
100~200만원	895 (43.7)
200~300만원	359 (17.5)
300만원 이상	141 (6.9)
현 복지수급 유무	
있다	338 (16.5)
없다	1,703 (83.5)
권역별	
서울	462 (22.5)
인천·경기	478 (23.3)
충청권	208 (10.2)
부산·경남	344 (16.8)
대구·경북	233 (11.3)
호남권	239 (11.7)
강원·제주	86 (4.2)

2) 질문구성

본 조사의 질문구성은 앞서 살펴본 복지권의 개념고찰을 통해 국민들이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권리인식과 권리행사, 의무이행 등의 주요요소에 초점을 두어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권리행사 의지는 어떠한가? 둘째, 복지권에 파생되는 의무이행 의지는 어떠한가? 셋째,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과 의무이행에 대한 인식의 특성과 복지제도에 대한 기대감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질문 하에 질문 구성은 크게 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2) 복지권에 대한 인식, 3) 복지권 행사의지, 4) 의무이행 의지, 5)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5부분으로 나누었다. 질문구성에 있어서 복지권의 옹호적 측면에 대한 직접적 질문은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옹호적 측면으로써의 복지권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복지대상자와 사회복지 전문가와 관계된 것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옹호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었지만 복지권 인식의 장애요인이나 권리행사의 장애요인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옹호적 측면에서의 복지권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구체적 질문 항목의 구성에 있어 복지권과 관련하여서는, 권리인식과 권리행사 측면에서 각각의 경향과 장애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총 8개 항목을 질문하였으며, 의무이행과 관련해서는 권리의 상대적 차원으로서 뿐 아니라 복지발전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국민들의 의무실천 내용과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 4개의 항목을 질문하였다.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개념인식의 특성과 복지제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중심으로 5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3〉 질문지 구성

구 분	문항수	세 부 항 목
일반적 사항	6	① 성별 ② 연령 ③ 학력 ④ 소득 ⑤ 직업 ⑥ 현재 복지수급 유무(본인 또는 가구구성원)
권리인식	4	① 복지에 대한 개념인식 ② 복지 1차 책임자 ③ 복지 보장 인식 ④ 권리인식 장애요인
권리행사	4	① 복지대상시 정부도움 여부 ② 이의신청 의향 ③ 이의신청 장애요인 ④ 제도개선 참여 의향
의무이행	4	① 조세 인상 ② 보험료 인상 ③ 거주지 복지시설 설치 의견 ④ 복지발전 실천방법
복지제도	5	① 최근 5년간 복지수준 비교 ② 현재 복지수준 평가 ③ 복지우선 분야 ④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 ⑤ 향후 10년 후 기대감

4. 조사결과

1) 복지권 인식

(1) 권리인식

복지권이 전체 국민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권리임을 감안할 때 복지권 인식의 특성을 알아보기 이전에 국민들이 복지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초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복지의 1차 책임에 대한 질문에 대해 53.5%가 '정부'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본인(20.8%)이나 가족(6.9%)'에 있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최근의 연구 결과(최균·류진석, 2000)와 마찬가지로 국민의식이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표 4>에 의하면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해에 있어서는 여전히 잔여적인 복지개념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복지를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국가가 해결하거나 (49.2%),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17.2%)하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31.2%)나 국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것(16.2%)으로 인식하는 것 보다 더 많았다.

복지에 대한 개념인식은 세대간, 학력간, 소득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20~30대의 젊은층, 대졸이상의 고학력층, 월소득 200만원 이상의 중상층이 복지를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중 특히 세대간 인식의 차이는 높은 연령층일수록 복지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잔여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젊은 연령층일수록 모든 국민의 생활보장 제도로 인식함으로써 시대가 지남에 따라 복지에 대한 이해가 점차 구빈적, 잔여적 차원에서 보편적인 개념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복지보장수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매우 왜곡된 정서를 보이고 있었다(<표 5> 참조). '잘사는 사람에게만 일부 보장되어 있다'는 응답이 35.8%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도 22.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연령, 직업, 학력,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인 국민정서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보장 수준에 대해 매우 비판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복지수급 유무와도 상관없이 동일한 응답경향을 보이고 있어 복지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조차 현재 복지제도의 형평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 복지에 대한 개념 인식

구 분	총계(%)	개인·가족 미해결 부분 국가가 해결	모든 국민 생활보장	생활곤궁자 구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총 계	1,930(100)	684(49.2)	603(31.2)	332(17.2)	312(16.2)
연령					
20대	497(100)	105(21.1)	206(41.4)	96(19.3)	90(18.1)
30대	492(100)	178(36.2)	169(34.3)	64(13.0)	81(16.5)
40대	418(100)	188(45.0)	107(25.6)	69(16.5)	54(12.9)
50대	292(100)	123(42.1)	66(22.6)	59(20.2)	44(15.1)
60대	231(100)	90(39.0)	54(23.4)	44(19.0)	43(18.6)
		N = 1,930 $\chi^2 = 91.39^{**}$			
학력					
중졸이하	296(100)	129(43.6)	46(15.5)	62(20.9)	59(19.9)
고졸	921(100)	330(35.8)	290(31.5)	173(18.8)	128(13.9)
대졸이상	702(100)	223(31.8)	263(37.5)	94(13.4)	122(17.4)
		N = 1,919 $\chi^2 = 56.22^{**}$			
소득					
월100이하	591(100)	198(33.5)	163(27.6)	123(20.8)	107(18.1)
100~200	855(100)	325(38.0)	263(30.8)	138(16.1)	129(15.1)
200~300	347(100)	115(33.1)	134(38.6)	46(13.3)	52(15.0)
300 이상	136(100)	45(33.1)	43(31.6)	25(18.4)	23(16.9)
		N = 1,929 $\chi^2 = 22.21^{**}$			

** p < .01

〈표 5〉 복지보장수준 인식(N=2,050)

항 목	응답자(%)
잘 사는 사람에게만 일부 보장	734(35.8)
전혀 보장되어 있지 못함	459(22.4)
못사는 사람에게만 일부 보장	411(20.1)
모든 국민에게 충분히 보장	99(4.8)
잘 모르겠음	340(16.6)
무응답	6(.3)

복지수혜를 낙인이나 수치심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복지권에 대한 높은 인식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6〉은 본인 스스로의 권리인식

에 대한 질문으로 복지대상자가 될 경우 정부로부터 도움을 기꺼이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정부로부터 기꺼이 도움을 받겠다'는 응답자가 1,380명(67.3%)으로 '받지 않겠다'는 응답자(360명, 17.6%)보다 4배정도 많았다. 이는 복지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인식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응답자(360명)의 사유를 알아본 결과 과반수 이상인 192명(53.2%)이 '본인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서 복지개념 인식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미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한편, '도움을 받아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27.6%로 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급부 수준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6〉 권리인식 : 정부로부터 복지수급 의향 (N=2,050)

항 목	응답자(%)
예	1,380(67.3)
아니오	360(17.6)
본인 스스로 해결	192(53.2)
도움받아도 소용 없음	99(27.6)
가족이나 기타 방법으로 해결	42(11.6)
부끄러운 일	20(5.6)
잘 모르겠음	7(2.0)
잘 모르겠음	298(14.5)
무응답	12(.6)

(2) 권리행사

진정한 의미의 복지권 실현은 막연하게 인식적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들의 권리주장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천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응답자 본인이 복지대상자가 될 경우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겠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만약 복지대상자의 자격이 갖추어졌는데도 이를 받지 못할 경우 행정당국이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함으로써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알아보았다(〈표 7〉 참조). 조사결과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응답자가 1,152명(56.2%)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는 응답자(24.2%)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앞서 복지수급에 대한 권리인식과 함께 권리행사 의지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사유에서는 '이의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64.4%), 이는 행정당국의 행정편의 및 복지부동 등의 이유로 아예 기대감조차 없기 때문이다. 기타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14.2%, '이의제기 방법을 몰라서' 9.9%, '사회복지사 등 다른 해결방법을 통해서' 6.6%였다. 이중 특히 이의제기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경우 중졸이하의 저학력자(16.3%)와 월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14.7%)이 고졸이상, 월 100만원 이상 소득계층에

비해 2배 가량 많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복지대상자들의 집단적 행위의 필요성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집단들의 정보제공과 대변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의향을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도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962명(47%)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494명, 24.1%)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권리인식적 측면 뿐 아니라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높은 실천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7〉 권리행사 : 이의신청 및 제도개선 참여 의향(N=2,050)

항 목	응답자(%)
1. 이의신청 의향	
예	1,152(56.2)
아니오	507(24.8)
소용이 없을 것 같기 때문	326(64.4)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음	72(14.2)
이의제기 방법을 모르기 때문	50(9.9)
사회복지사 등 다른 해결방법을 통해서	33(6.6)
잘 모르겠음	25(4.9)
잘 모르겠음	385(18.8)
무응답	6(.3)
2. 제도개선 위한 시민단체 활동 참여 의향	
예	962(46.9)
아니오	494(24.1)
잘 모르겠음	589(28.8)
무응답	5(.2)

2) 의무이행 의지

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권리의 확대뿐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의무이행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의무이행의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으로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한 세금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물었다(〈표 8〉 참조).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인상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하겠다'는 의견이 67.8%, '반대' 21.5%, '찬성' 9.0%였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하겠다'는 의견이 52.7%, '반대' 41.5%, '찬성' 4.1%였다. 두 경우 모두 절대찬성 의견은 매우 소수였으나 세금인상에 대한 절대반대 의견이 21.5%인 반면,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2배가 많은 41.5%가 절대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최근 들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제도의 통합과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노출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강한 저항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사안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이 가장 많은 것은 향후 국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따라 지지 혹은 반대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로, 이는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시 충분한 국민적 의견과 지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8〉 의무이행 : 세금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N=2,050)

항 목	복지확대 세금 인상	보험료 인상
	응답자(%)	응답자(%)
찬성	184(9.0)	83(4.1)
사안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	1,390(67.8)	1,080(52.7)
반대	442(21.5)	851(41.5)
잘 모르겠음	31(1.5)	35(1.7)
무응답	3(.1)	1(.0)

의무이행 의지와 관련하여 거주지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이 들어설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45.8%, '좋지 않지만 반대하지 않겠다' 49.2%로 '적극 반대하겠다'(1.8%)는 응답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인식적 측면에서는 매우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소위 혐오시설에 대해 여전히 주민의 반대와 시위하는 모습이 매스컴에 보도 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실제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식적 측면과 현실의 모습에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인식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대감이나 당위성에 대한 사고가 반영되지만, 실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이해관계에 의해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즉,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면 거주지 땅값이나 집값이 하락하고 자녀의 교육환경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다 지역사회에 개방된 사회복지시설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주민교육이나 주민통합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러한 측면들을 서서히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본인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내용이다(〈표 9〉 참조). 가장 많은 응답은 '성실한 세금 납부'로 29.3%였으며 가장 소수의 응답은 '성실한 보험료 납부'로 9.9%에 그쳤다. 이 결과는 앞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공적보험에 대한 심각한 문제인식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자원봉사활동 참여' 27.5%, '시민단체활동 참여' 12.4%, '후원금 기부' 12.0% 등으로 국민들의 복지제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는 적극적 참여의지와 현재의 참여실태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활동자의 경우 91년 통계청 사회지표조사에서는 5.4%였으나 1999년 갤럽조사를 통한 민간단체의 연구에서는 14%(볼런티어 21, 2000)로 나타나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본 조사결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지를 보인 27.5%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차원, 정책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으나 향후 자원봉사활동 등 적극적 실천의지를 보인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과 지원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9〉 의무이행 : 복지제도 발전을 위한 실천방법(N=2,050)

항 목	응답자(%)
성실한 세금 납부	604(29.3)
자원봉사활동 참여	563(27.5)
시민단체활동 참여	254(12.4)
후원금 기부	245(12.0)
성실한 보험료 납부	178(8.7)
잘 모르겠음	202(9.9)
무응답	3(.1)

이상 의무이행 의지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인상이나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여지가 강한 반면, 거주지 복지시설 설치나 복지제도 발전을 위한 실천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의무이행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복지권 인식에 따라 의무이행 의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0〉 참조). 먼저, 복지권의 권리의식에 따른 의무이행 의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는 크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복지의 1차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한 경우와 복지수급권을 권리로 인식한 경우 즉, 복지권 인식이 높은 경우 세금인상에 대해 반대할 확률이 높았다. 높은 권리인식에 따른 높은 의무이행 의지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세금인상에 대한 반대여지가 많은 것은 앞서 〈표 8〉에서와 같이 '사안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의 유보적 입장을 취한 사람이 68%에 이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거꾸로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세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라면, 얼마든지 의무이행 의지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권리행사 의지에 따른 의무이행 의지의 차이에 있어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단체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세금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태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중 특히 제도 개선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세금인상에 많은 찬성을 보임으로써 권리행사에 따른 비교적 높은 의무이행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반대여지가 많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공적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저항으로 인해, 높은 권리행사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난 낮은 의무이행의 결과로 보여진다.

〈표 10〉 복지권 인식과 의무이행 의지

	세금인상		N	비고	보험료 인상		N	비고
	찬성	반대			찬성	반대		
I. 권리의식								
I-1. 복지1차 책임자								
본인	44	75	119	N = 558	25	158	183	N = 814
가족	16	22	38	$\chi^2 = 6.22$	6	51	57	$\chi^2 = 5.26$
기업	10	31	41	(p = .10 [†])	5	54	59	(p = .15)
정부	102	258	360		41	474	515	
I-2. 복지수급권 인식								
예	133	277	410	N = 547	57	551	608	N = 789
아니오	34	103	137	$\chi^2 = 2.81$	19	162	181	$\chi^2 = .20$
				(p = .09 [†])				(p = .65)
II. 권리행사								
II-1. 이의신청								
예	110	208	318	N = 505	47	447	494	N = 744
아니오	55	132	187	$\chi^2 = 1.44$	25	225	250	$\chi^2 = .04$
				(p = .23)				(p = .83)
II-2. 제도개선참여								
예	129	133	262	N = 461	45	339	384	N = 660
아니오	35	164	199	$\chi^2 = 48.4$	21	255	276	$\chi^2 = 3.01$
				(p = .00**)				(p = .08 [†])

† p < .10 ** p < .01

3) 복지제도 인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권과 의무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구체적인 의무이행 측면에서는 사회보험제도 등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과 향후 기대감 등을 알아봄으로써 복지권과 의무이행 및 제도에 대한 인식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복지분야는 무엇이며, 또한 비교적 잘 갖추어진 복지 제도는 무엇인지 질문하였다(〈표 11〉 참조). 그 결과 복지 우선분야와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 모두 빈곤대책, 취약계층대책, 보건의료대책, 실업대책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로 '아무것도 없다'는 응답이 41.0%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에 대해서는 '중진국 수준'이 48.1%였으며, '후진국 수준'으로 응답한 경우도 30.7%에 이르고 있었다. 결국, 우리나라에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는 없으며, 복지수준은 후진국이라는 평가결과를 앞서 우리나라 복지보장 수준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결과와 함께 국민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매우 부정적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11〉 복지 우선 분야 및 제도 평가(N=2,050)

항 목	복지우선분야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
	응답자(%)	응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빈곤대책	546(26.6)	318(15.5)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대책	526(25.7)	284(13.8)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대책	337(16.5)	222(10.8)
고용보험 등 실업대책	316(15.4)	204(9.9)
국민연금 등 소득보장대책	258(12.6)	173(8.4)
잘 모르겠음/없음	61(3.0)	841(41.0)
무응답	4(.2)	9(.4)

또한, 복지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발전에 대한 기대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12〉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향후 10년 후 복지발전에 대해 55.9%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 사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별 변화가 없거나 더 나빠졌다고 인식한 경우 향후 10년 후 복지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도 매우 회의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현재 복지수준을 중진국 또는 후진국 수준으로 인식한 경우에 기대감이 낮았으며, 복지 보장수준에 있어서도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거나 잘사는 사람에게만 일부 보장되었다고 인식한 경우가 기대감이 낮았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향후 복지발전에 대한 회의적인 기대감은 우리나라 복지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매우 이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복지수준 인식과 향후 복지 발전 기대감

구 분	총 계	향후 10년후 복지발전 기대감	
		기대함	기대하지 않음
총 계	1,802(100%)	794(44.1)	1,008(55.9)
1. 지난 5년간 복지수준 변화			
더 나아짐	272(100%)	192(70.6)	80(29.4)
별 변화없음	892(100%)	336(37.7)	556(62.3)
더 나빠짐	384(100%)	114(29.7)	270(70.3)
N = 1,548 $\chi^2 = 122.28^{**}$			
2. 현재 복지수준			
선진국 수준	20(100%)	15(75.0)	5(25.0)
중진국에서 선진국사이	261(100%)	161(61.7)	100(38.3)
중진국 수준	876(100%)	401(45.8)	475(54.2)
후진국 수준	568(100%)	177(31.2)	391(68.8)
N = 1,725 $\chi^2 = 80.10^{**}$			
3. 복지보장수준			
모든 국민에게 보장	96(100%)	62(64.6)	34(35.4)
잘사는 사람에게 일부 보장	649(100%)	255(39.3)	394(60.7)
못사는 사람에게 일부 보장	367(100%)	209(56.9)	158(43.1)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음	418(100%)	123(29.4)	295(70.6)
N = 1,530 $\chi^2 = 82.52^{**}$			

** p < .01

〈표 13〉은 복지권에 대한 권리인식과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 의지가 모두 높은 경우 이들의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결과는 매우 부정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복지권 인식과 높은 의무이행 의지는 우리나라의 높은 복지발달 수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권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경제성장과 시민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국민들 스스로 권리의식이 점차 성장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금인상이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무이행 의지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난 이유는 우리나라의 낮은 복지수준과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13〉 권리 인식·의무이행 의지와 복지제도 평가

구 분	총계(%)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					
		없다	빈곤	취약계층	보건의료	실업	소득보장
복지1차책임 : 정부	1,094(100)	474(43.3)	162(14.8)	147(13.5)	116(10.6)	110(10.1)	85(7.7)
복지수급권 인식	1,376(100)	546(39.7)	218(15.8)	193(14.0)	156(11.3)	146(10.6)	118(8.6)
이의신청	1,147(100)	459(40.2)	192(16.8)	156(13.6)	120(10.5)	119(10.4)	100(8.8)
제도개선참여	962(100)	347(36.1)	154(16.0)	163(17.0)	111(11.5)	103(10.8)	83(8.6)
세금인상 찬성	184(100)	46(24.8)	31(16.9)	28(15.4)	34(18.3)	19(10.6)	26(14.0)
보험료 인상 찬성	83(100)	18(21.8)	11(12.9)	16(19.5)	16(19.1)	11(12.9)	11(12.9)
거주지 복지시설 설치 찬성	1,940(100)	790(40.7)	304(15.7)	274(11.1)	212(10.9)	193(9.9)	167(8.6)

5.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복지제도의 발달에 있어 복지권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의 특징과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개념 이해는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국가가 해결하는 잔여적 개념에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복지를 보편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극빈층이나 요보호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빈적 개념 인식으로부터는 상당히 발전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20-30대 젊은층이 50대 이상의 노년층에 비해 복지를 모든 국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인식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보편적 개념 인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책임의 제도를 강조하는 보편적 개념인식으로의 전환은 복지가 취약계층만을 위한 시혜적 사업이 아닌 국민 누구나가 복지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권리인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둘째, 복지권의 인식적 측면에서는 복지의 1차 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복지수급권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전반적인 권리의식은 높게 나타났다. 복지권의 실천적 측면에서도 이의신청이나 제도개선 활동 참여 등 권리행사를 위한 실천의지에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연구자가 당초 권리인식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을, 실질적인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

을 예상한 것과는 달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권리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수급권에 대한 인식의 장애요인으로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유나 도움을 받아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급여수준에 대한 기대감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권리행사의 장애요인으로 행정당국의 대응 미비 등 정부에 대한 낮은 기대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무이행 의지는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한 세금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사안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의 유보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나, 절대 반대 의견도 상당수였다. 특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41.5%가 반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공적 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이와 관련한 의무이행 의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거주지에 복지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높은 지지의사를 보였으며, 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방법에 있어서도 성실한 세금납부를 비롯하여 자원봉사활동이나 시민단체활동 참여 등 적극적 참여의사를 나타내고 있었다.

넷째, 국민들의 높은 복지권 인식과 의무이행 의지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나 향후 기대감은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왜곡된 정서가 표출되고 있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중진국 혹은 후진국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후의 복지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는 기대하지 않는 편이 더 많았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 못하거나 심지어 잘사는 사람들에게만 일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0%에 이르고 있어, 권리가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특권이나 선택으로서 평가되고 있었다. 또한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41%가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의무이행 의지가 비교적 높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복지권 인식수준은 권리의식, 권리행사 모든 측면에서 매우 높았으며, 의무이행 의지에 있어 세금인상과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유보적 혹은 반대의지를 보인 반면,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에서는 높은 참여의지를 보였다. 세금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 결과가 나온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과 공적보험제도 등 현재의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심한 불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복지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권과 관련된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더 이상 일방적인 국가주도하에서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복지를 모든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서 인식하는 과정에 있을 뿐 아니라 복지수급을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적극적인 청구와 제도개선 요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실천의지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긍정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복지급부 수준이나 행정당국의 대응에

대한 낮은 기대감 등이 국민들의 복지권 인식과 실천행위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정책이나 행정시스템이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와 정책당사자들은 더 이상 국민들을 정부주도의 정책에 대해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식에 뒤떨어지지 않는 제도로 일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혜택이 잘사는 사람에게만 일부 보장되어 있다는 정서나 보험료 납부 및 인상 등에 대한 강한 반대, 복지발전에 대한 회의적인 기대감 등은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객관적인 평가와 상관없이 지배적인 국민정서로 나타났다는 점은 우려되는 일이다. 의약분업실시, 건강보험 통합, 국민연금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등 국민의 정부에서 단행된 일련의 개혁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민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된다. 정책수립이나 학계, 전문가 등은 정책수립시 이상과 이론을 적용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 뿐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의 개혁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제도의 부정적 측면이나 문제 일변도의 언론보도를 지양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복지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좀더 부각시킴으로써 복지제도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좀더 밀접하고 친밀한 것임을 알려 국민들의 정서가 이반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국민들을 복지의 대상으로 뿐 아니라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방법의 선택에 있어 자원봉사활동 참여나 시민단체 활동 참여, 후원행위 등에 대한 높은 참여의사는 이러한 필요성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정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권익보호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재정 지원, 지속적인 후원활동이나 높은 후원금 기부에 대한 세금공제율의 점진적 확대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관과 서비스제공자들 역시 일반국민들과 복지수급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역할에 좀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일반국민의 복지수급에 대한 접근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나 각종 제도의 내용, 자격이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과 역을한 개인이나 집단들을 위한 대변과 옹호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복지수급자들이 서비스 수급과정에서 낙인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스스로의 전문가적 태도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과정에서의 사회복지실천가와 복지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권에 대해 다양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OECD의 회원국으로서 경제적 선진국으로 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복지예산의 증가, 4대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확충 등 복지국가로서의 발돋움 해 나가고 있다. 국민들 또한 경제적 안정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높은 권리의식과 복지발전을 위한 적극적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복지국가의 틀

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으며 앞으로 복지제도의 발달과 국민들의 복지권이 향유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데 보다 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전반적인 국민 복지의식 조사나 복지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권 조사와는 달리 '복지권'이라는 구체적 개념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전국조사라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복지권과 관련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정책당국이나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며, 추후 복지권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조사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김계환. 1998. 『헌법학정해』, 박영사.
- 김상균. 1985. "한국 대학생의 복지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7권 4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상균·정원오. 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25호.
- 김영란. 199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 계급 및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나병균. 1999. "인권으로서 사회보호의 권리인정", 『사회복지』, 통권142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남찬섭 역. 1996. 『복지국가의 사상과 이론』, 한울.
- 박광덕. 2000.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 박순우. 1998. "T. H. Marshall의 시민권적 복지론의 재조명", 『사회복지정책』, 창간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박태룡. 1992. "사회복지전문요원 업무실패에 관한 조사연구", 『대구대 사회복지연구』, 20호.
- 백종만. 1988. "복지권은 인권인가",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9호 2권.
- 블런티어 21. 1999. '99한국인의 자원봉사 의식과 활동현황 연구 보고서.
- 신섭중·박병헌. 1995. "한국, 일본, 미국의 복지의식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27호.
- 신섭중 외 역. 1995. 『일본 현대복지학 사전 - 현대 복지학총람』, 대학출판사.
- 안상훈. 2000. "복지정치의 사회적 균열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3호.
- 윤찬영. 1998. 『사회복지법제론 I』, 나남출판사.
- 이인재. 1998. "IMF관리체제이후 한국인의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2호,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1999.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 이혜경. 1993.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에서의 복지국가",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21호.
- 이혜경·최재성. 1997. "한국인의 사회불공정성인식의 특성과 사회복지에의 함의", 『사회과학논집』, 제 28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혜원. 1999.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조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9호.
- 조흥식. 2000. "경제위기하의 생존의 권리와 복지권", 『21세기의 인권』, 한국인권재단편, 한길사.
- 최균·류진석. 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제16호,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 황청일·한석태·신광식·홍양희. 1995. "저소득계층의 복지권 내용과 그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보』, 통권14호.

홍성찬. 2002. 『법학개론』 제3전정판, 박영사.

A. M. Rees. 1995. "The Other T. H. Marshall".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24/4,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rl Wellman. 1982. *Welfare Rights*. 김만두 역. 1989. 『복지권론』, 홍익계.

Christopher Pierson. 1991. *Beyond the Welfare State?*,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Felicia Kornbluh. 1998. "The goals of the national welfare rights movement: Why we need them thirty years later" *Feminist Studies*, vol.24. College Park, Spring 1998.

J. Donald Moon. 1988. *Responsibility, Rights & Welfare*. USA; Westview Press.

Kelly, David. 1994. "The rights angle", *Reason*, Vol. 25, Issue 8.

Mary Langan. 1998. *Welfare : needs, rights, and risks*, London : The Open University.

Nahan, Mike. 1996. "As welfare right grow, so do taxes", *IPA Review*, Vol. 49. Melbourne.

Pete, Alcock. 1989. "Why Citizenship and Welfare Rights Offer New Hope for New Welfare in Britain", *Critical Social Policy*, Vol. 26.

Pete Alcock · Jane Shepherd · Gill Steward and John Stewart. 1991. "Welfare Rights Work into the 1990's - a Changing Agenda".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2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Ruth Cohen and Andree Rushton. 1982. *Welfare Rights. Great Britan ; Heinemann Educational Books*.

Teacher's Ed. 1994. "The fight for welfare rights Scholastic", Scholastic Inc. Mar. 11. Vol. 126, New York.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Koreans toward the Welfare Rights

Kim, Mee-Hye(Associat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Jung, Jin-Kyoung(Doctoral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by examining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Koreans toward the welfare rights. The study was done through a telephone survey conducted by an opinion research institute on 2,050 respondents in 16 cities and provin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majority of Koreans responded that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welfare rests with the government and perceived their welfare receipt rights in a positive way. Respondents also showed an assertive attitude toward exercising their rights by stating that they intend to file a demurrer or participate in civic activities. Second, in terms of duty performance, most respondents showed different positions concerning tax hike and insurance rate increase, although they showed a stronger opposition to an increase in insurance fee. In addition, 90% of the respondents were in favor of building welfare institutions in the residential area and an overwhelming proportion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y would take an active part in welfare development by regularly paying taxes and volunteering. Third, the respondents gave a very negative rating to Korea's welfare system and its overall level. That is, people thought that the level of Korea's welfare system is on a par with that in developing or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that the welfare system benefits no one or only the rich. People generally felt that there was not one proper welfare institution.

In conclusion, the study found that Koreans have keen awareness of their welfare rights and proactive attitude toward welfare development, whereas negative viewpoint toward tax and insurance fee increases. This may stem from people's distrust of government welfare policies and the existing welfare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at welfare policy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people's political attitude. Therefore, government authorities must recognize people not as passive receivers of welfare benefit but as active policy partners, and establish policies that reflect people's high welfare rights perception and willingness to take part in welfare development.